

2024년도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9.(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안효질, 손수호,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위원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3,770건(안건번호 제2024-30628호~3439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30628호~30651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0652호~30665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30666호~30681호는 ◇◇◇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30682호~34397호 5,835건은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일시적으로 저장한 다음 복제를 하는 것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그러함. 기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A 위원: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전 세계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별도 서버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음.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전송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 이외에 쇼핑몰 등 OSP에서 이러한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가? 이런 기기가 어떻게 쓰일지 용도가 분명한데 사전에 OSP에서 조치를 할 수는 없는가?
- A 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 OSP에 방조 책임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사법적인 판단까지 가는 영역임. 다만 보호원에서 심의를 할 때 사법적인 조치까지 보호원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D 위원: 검토보고서에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도 적용된다 또는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우리나라 방송국에 전파를 쏘주고 그걸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영역 내에 송출하는 것을 동시중계 방송이라고 하는데, 법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음.
- 박현주 전문위원: 해당 부분은 방송을 최초로 송출하는 쪽에서는 동시중계이고, 해당 방송을 재전송하는 측에서는 전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송권 침해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30628호~3065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30628호~306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30652호~3066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30652호~3066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E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30652호~3066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30666호~3068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30666호~3068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30666호~30681호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

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30682호~3439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피지컬: 100 언더그라운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32723호(‘피지컬: 100 언더그라운드’)는 2024.03.19. 공개한 한국 방송으로 웹하드에서 430포인트에 판매중임.

(‘눈물의 여왕’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32994호(‘눈물의 여왕’)는 2024.03.09. 부터 방영중인 한국 방송으로 웹하드에서 150포인트에 판매중임.

(‘오토캐드 AutoCAD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34385호(오토캐드 AutoCAD 2024)는 2023년 발매한 소프트웨어로 웹하드에서 250포인트에 판매중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4-30682호~343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4-30682호~3439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30628호~30651호(순번 1번~24번), 제2024-30652호~30665호(순번 25번~38번), 제2024-30666호~30681호(순번 39번~54번), 제2024-30682호~34397호(순번 55번~3770번)는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16.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안효질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